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22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감척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서천호의원안)	3

I.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52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 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

감척사업은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령 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감척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감척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서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폐업지원금 비과세조항 신설(안 제104조의37)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로어업 재개시 감면세액 추징(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시행일: 공포일 ☐ 적용례: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적용

* 서천호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2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등을 의미함.¹⁾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연근해어선의 수 및 어획량이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어선·어구의 감축을 추진하는 사업임.

감축대상 어선·어구로 선정되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폐업지원금(감정평가로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 어선·어구 잔존가치²⁾, 어선원 생활안정자금³⁾ 등을 지원받게 되고, 직권감척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른 신규용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 지원의 제한조치⁴⁾가 이루어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13척의 연·근해어업에 대한 감척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기간 폐업지원금 3,471억 5,800만원, 매입지원금 2,488억 6,700만원 등 총 5,960억 2,500만원의 지원금이 교부되었음.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3) 실직어선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 한도로 지원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어선·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용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어선·어구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척, 백만원)

업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근해어선감척수	2	13	53	86	67	65	82	368
폐업지원금	1,229	4,423	21,959	58,009	58,403	46,163	82,980	273,166
매입지원금	660	7,632	30,458	42,212	30,694	40,058	60,568	212,282
합계	1,889	12,055	52,417	100,221	89,097	86,221	143,548	485,448
연안어업감척수	292	360	176	109	117	207	184	1,445
폐업지원금	7,972	14,771	7,699	5,585	10,379	16,294	11,292	73,992
매입지원금	5,097	5,567	4,139	3,096	4,284	6,906	7,496	36,585
합계	13,069	20,338	11,838	8,681	14,663	23,200	18,788	110,577
근해 연안어업 감척 수	294	373	229	195	184	272	266	1,813
폐업지원금	9,201	19,194	29,658	63,594	68,782	62,457	94,272	347,158
매입지원금	5,757	13,199	34,597	45,308	34,978	46,964	68,064	248,867
합계	14,958	32,393	64,255	108,902	103,760	109,421	162,336	596,025

자료: 법안 비용추계서,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 한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2025년까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⁵⁾로 과세⁶⁾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감척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는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⁷⁾하여 해당 지원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음.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6) 국세청은 동 폐업지원금을 무체재산권 양도대가로 보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나.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이에 따라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연 5천만원
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감척지원금도 해당 범위에 포함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감척지원금을 포함한 어로어업이나 양식
어업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여전히 과세대상임.

[주요 농업·어업·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과세 한도
농업	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전액 비과세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작물 시설작물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축산업	소 사육업	5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5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양돈업	7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70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임업	임목 벌채·양도 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 개정안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
려는 것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구조개선 정책 집행의 속도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정
부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에 따른 폐업·퇴출 보상금에 과세를 유지할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당사자의 참여 유인이 저하되고 구조조정 속
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

택 및 수행의 자유를 제약하여 시장에서의 퇴출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이라는 추가적 장벽을 제거할 경우 해당 업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어선감축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율이 저조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데, 개정안과 같이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폐업지원금 관련 어업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자발적 감축 또는 직권감축에 따른 협조 유인을 제고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

둘째, 고령층 및 영세사업자들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며, 보상금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부채 정리·전업·재취업 등 폐업 이후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참고로, 어선·어구 감축이 촉진되면 과도한 어선·어구로부터 유발되는 어족자원의 부족, 어선사고의 발생 및 탄소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사업자가 폐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공익목적 여부, 지급 주체 등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둘째, 다른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보상금, 「공익사업법」상 보상금 등 다른 보상금도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여타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과세되고 있으며 별도로 세액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개 사육업을 종사하는 자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시 받게되는 보상금의 경우 개 5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을 한시적으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⁸⁾에 추가하여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⁹⁾ 등을 참고하여 감척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농어가 부업소득은 비과세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9)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1.16.

셋째, 개정안은 기존에 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폐업지원금에게까지 소급적용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안정성 및 기납부된 세금 환급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기지원받은 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타 사업 관련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척지원금에 한해서만 비과세 특례 도입시 다른 지원금 및 보상금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부동의하는 입장임.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어선·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수령한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2027~2031년 5년간 총 1,135억원(연평균 2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

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비과세 (안 제104조의36)	△689	△111	△111	△111	△111	△1,135	△2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